

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(황운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49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7.

발 의 자 : 황운하 · 백선희 · 정춘생
김재원 · 신장식 · 서왕진
강경숙 · 김준형 · 용혜인
차규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형사소송법」이 일부개정되어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됨.

이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등록사항의 심사 결과 「공직자윤리법」 제8조제7항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(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)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는 바, 수사주체가 검사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, 그 조사 의뢰를 받는 법무부장관(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)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(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)으로 변경하려는 것임(안 제8조 및 제8조의2).

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무부장관(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)”을 “관할 수사기관의 장(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8항 중 “법무부장관”을 “관할 수사기관의 장”으로, “검사(檢事)”를 “관할 수사기관”으로 한다.

제8조의2제6항 본문 중 “법무부장관(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)”을 “관할 수사기관의 장(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)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등록사항의 심사) ① ~ ⑥ (생 략)	제8조(등록사항의 심사) ① ~ ⑥ (생 략) (현행과 같음)
⑦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 에 따른 심사 결과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 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증명서 류를 첨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<u>법무부장관(군인 또는 군무원</u> <u>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)에게</u>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.	⑦ ----- ----- ----- ----- <u>관할 수사기관의 장(군인 또는</u> <u>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</u> <u>관)-----.</u>
1·2. (생 략)	1·2. (현행과 같음)
⑧ <u>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</u> 관은 제7항에 따라 조사의뢰를 받으면 지체 없이 <u>검사(檢事)</u> 또는 군검사에게 조사를 하게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공직자윤 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	⑧ <u>관할 수사기관의 장-----</u> ----- ----- <u>관할 수사</u> <u>기관-----</u> ----- -----.
⑨ ~ ⑫ (생 략)	⑨ ~ ⑫ (현행과 같음)
제8조의2(심사결과의 처리) ① ~ ⑤ (생 략)	제8조의2(심사결과의 처리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 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	⑥ ----- ----- ----- -----

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 를 <u>법무부장관(군인 또는 군무 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)에게</u> 통보할 수 있다. 다만, 조세 관련 법령의 경우에 는 국세는 국세청장 또는 관세 청장에게, 지방세는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보 할 수 있다.	----- ----- ----- <u>--관할 수사기관의 장(군인 또 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을 말한다)-----</u>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--	---